

의안번호	2213446
의 퇴 인	박상혁의원
회 답 일	2025.10.21.
추 계 번호	25D5476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실태조사와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,300만원, 2031년 8,400만원 등 5년간 총 4억 1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실태조사 등 (안 제35조의2)	실태조사	75	75	75	75	75	375
	소비자교육	8	9	9	9	9	44
합계		83	84	84	84	84	419

주: 본 추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,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업의 방법과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5 (선불식할부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(이하 “선불식할부거래정보시스템”이라 함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35조의2 (실태조사 등)	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7조의5 (선불식 할부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— (미대상)	현재 '선진소비자정책 추진(1431-600)'의 내역사업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·운영 중 - 시스템 구축(2025): 660백만원 - 시스템 운영(2026): 259백만원 심의 중
2	안 제35조의2 (실태조사 등)	0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비용과 소비자교육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하며,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사업 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함

- 실태조사: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거래 실태조사 단가(75백만원) 적용

[표 2] 유통거래 실태조사 예산: 2020~2024년

(단위: 개, 백만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
조사대상 업체	7,000	7,000	7,000	7,000	7,000
조사방식	설문조사	설문조사	설문조사	설문조사+ 대면조사	설문조사+ 대면조사
예산액	25	25	25	75	75

주: 조사대상 업체의 수와 실제 응답한 업체의 수에는 차이가 존재함

자료: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소비자교육: “소비자 3개법(전자상거래법, 방문판매법, 할부거래법)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순회교육” 단가(2023년 기준 7,695천원)에 소비자물가상승률¹⁾ 적용

[표 3] 소비자 3개 법률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순회교육: 2023년

(단위: 천원)

구분	출장여비	교재인쇄비	임차료	기타	합계
금액	2,000	4,925	270	500	7,695

주: 본 순회교육은 집합교육을 의미함. 온라인교육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추가비용 없음

자료: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1)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 3. 경제전망 기준)

구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	3.6%	2.3%	1.9%	2.0%	2.0%	2.0%	2.0%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사업의 단가를 적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비용과 소비자교육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실태조사와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,300만원, 2031년 8,400만원 등 5년간 총 4억 1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실태조사	실태조사 횟수(A, 회)	1	1	1	1	1	—
	실태조사 단가(B)	75	75	75	75	75	—
	소계(C=A×B)	75	75	75	75	75	375
소비자교육	집합교육 횟수(D, 회)	1	1	1	1	1	—
	교육비용 단가(E)	8	9	9	9	9	—
	소계(F=D×E)	8	9	9	9	9	44
합계(G=C+F)		83	84	84	84	84	41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,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업의 방법과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assembly.go.kr